

중재법시행령(안)의 체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ystem of the Arbitration Act Enforcement Ordinance

남 선 모**

Seon-Mo Nam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중재법시행령의 필요성
- III. 중재법시행령(안)의 체계
- IV. 개별 조문의 검토
- V. 나오며
- 참고문헌
- Abstract

주제어 : 중재법시행령, 중재판정부, 중재합의, 당사자, 중재, 중재인

* 이 논문은 2013년도 한국중재학회 동계학술대회(2013.12.17)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정하였으며 당시 심도깊은 토론을 해주신 강릉원주대 조정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세명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nsm@semyung.ac.kr

I. 들어가며

중재법은 1966.3.16. 법률 제 1767호로 제정되었으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제정없이 단행법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만 법 제41조에 의해 중재규칙을 제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특이한 부분은 중재규칙의 경우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의무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재분야의 활성화와 확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서의 중재법시행령을 제정하고 중재법시행규칙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주요국의 중재법 개정 동향과 우리 중재법의 개정방향'을 주제로 창립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¹⁾ 그리고 2013년 2월 27(수) ~ 3월 1(금) (2박 3일)로 서울 YMCA 시민중계실 ADR센터에서는 다락원캠프장(의정부 소재)에서 로스쿨, 사법연수원(입학 예정자 및 재학생) 30명 을 대상으로 제3회 예비 법조인을 위한 ADR 캠프를 실시한 바도 있다.²⁾ 이 외에도 연세대로스쿨 및 경희대 로스쿨 등에서도 중재법 관련 특별강좌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교육의 다원화는 향후 법률시장의 개방과 중재의 저변화에 대처하는 주요 방안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재제도의 구체적 집행절차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위헌법률의 소지를 줄어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중재법의 자리매김과 제도의 확산을 도모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재법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통과하여 제정되고,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한 법률, 시행규칙은 해당 각부의 장관이 결정한 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통상 법률은 법 적용의 일반적인 사항을, 시행령은 구체적인 집행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행정형과 사법형을 구분하여 행정형 ADR은 행정분쟁해결법으로 사법형 ADR은 대체적 분쟁해결법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재법을 개정하고 그 시행령을 정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중재법시행령을 입법화하기 위한 제정안을 연구하고 법안의 체계와 내용에 대하여 주요 쟁점별로 포함될 조문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사단법인 한국중재 조정법연구소는 2011년 3월 11일(금) 14:00~17:00,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421호)에서 중재·조정법 관련 법제도와 중재·조정실무연구 등을 주요사업으로 창립총회 및 기념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장문철 경찰대학 교수가 '개정 UNCITRAL 모델국제상사중재법의 국내 수용의 필요성'에 대해 기초발언하고, 강병근 고려대로스쿨 교수가 '영미법계 국가의 중재법개정 동향'을, 김상수 서강대로스쿨 교수가 '대륙법계 국가의 중재법 개정 동향'을 주제로 발제한 바 있다. kpa.org/bbs/board.php?bo_table=schedule&wr_id=1241

2) youngymca.tistory.com/

II. 중재법시행령의 필요성

1. 중재법시행령의 역할

현행 중재법³⁾은 법률의 기본적인 형식과 체계를 갖춰 본칙과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다.⁴⁾ 일반 법률의 경우, 본칙은 다시 총칙규정, 실체규정, 보칙규정 및 벌칙규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중재법에서는 벌칙규정이 누락되어 있다. 다만 처벌법규에 대한 위임입법의 엄격성에 비추어 시행령에 규정할 것인지 여부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밝힐 문제이다.⁵⁾ 이런 형식을 감안하여 볼 때 중재법은 총칙 편에 이어 일부 실체적 규정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이후 중재법시행령을 제정하여 구체적 집행절차에 대해 위임함으로써 그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절차법에서도 구체적인 집행사항을 위해서는 시행령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이 규정하는 집행사항을 구체화하지 않을 경우 집행력 담보나 위헌의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540호, 1997.12.15, 제정)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8974호, 2005.7.27, 제정) 등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고 민사소송법의 경우, 시행령 역할로서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64호 제정 2005. 07. 26.)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경우도 형사소송법시행령 제정과 관련하여 2011.10.12.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경찰이 그동안 내사 단계에서 해온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의 활동도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초안을 마련해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사안은 구체적 집행과정에서 일일이 본법에 모두 규정할 수 없으며 시행령에 위임하여 기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해당법률의 체계상의 요구이기도 하다. 나아가 중재법의 전체조문과 관련하여 일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당사자’의 구체적 내용 적시로 이어지며 이런 의미에서 제1조(목적)에서의 ‘사법(私法)상의’ 분쟁은 ‘당사자

3) 법률 제1767호, 1966.3.16. 제정(시행 1966.3.16.)

4) 법률의 기본적인 형식과 체계는 일반적으로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는 것과 흡사하다. 국회 법제실, 법제실무, 2011, p.74.

5) 전원재판부 94헌바 22, 1997.5.29. 犯罪와 刑罰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委任立法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헌법 제75조는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헌법이 특히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법률에 의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는 기본권보장 우위사상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므로,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바, 따라서 처벌법규의 위임을 하기 위하여는 첫째,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法律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둘째, 이러한 경우에도 法律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셋째,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하되, 위임입법의 위와 같은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當事者) 간의 분쟁' 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법 제3조(정의) 1항의 '사법상의 분쟁' 또한 '당사자 간의 분쟁 또는 분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행정형 ADR의 경우에도 개별법에서 그 필요에 따라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 절차나 효력 면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으로 통합ADR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학계의 주장을 찾아볼 수 있다.⁶⁾ 특히 기구 설립에 관한 특단의 규정이 불비한 채 향후 중재기관의 난립으로 법률시장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해서도 국내 중재의 구체적 사항 적시를 위해 중재법시행령의 역할이 중요시 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7년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바, 최근 72개의 민간 ADR이 활약하고 있다. 우리도 관련법을 정비하여 중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감독 및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외⁷⁾ 그 역할을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이다.

2. 제정 방향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중재법이나 변호사법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1949.11.7. 제정되어 수차례의 개정 후 2012년을 전후하여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⁸⁾ 중재법과 비교해 보면 현행 중재법상의 중재인 적격에 대해 변호사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이 조문은 중재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규정으로 중재법에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는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⁹⁾ 나아가 중재법 제3장 중재판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법 제12조(중재인의 선정) 제2항에서 중재인의 선정절차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할 것이 아니다. 법 제14조에서도 "중재인에 대한 기피 절차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 제13조의 규정과 모순된다. 모든 절차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면서 중재인에 대한 기피 사유를 두는 것은 중재인협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더군다나 법 제17조 6항과 7항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위헌시비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현 중재규칙에서 중재의 전과정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로 볼 수 있으나 '자율'의 진정성은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선정 등 일정한 통제 하에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중재판정부는 사건을 전문화·유형화하여 해당분야별로 중재인을 선정해줌으로

6) 이견목,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법제의 주요쟁점과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2.

7) 남선모 "한국중재의 분야별 확산에 관한 검토", 『중재연구』제22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12.12, p.21.

8) 법률 제10922호, 2011.7.25. 일부개정(시행 2012.1.26.)

9) 남선모, 앞의 논문, p.20.

10) 2013.12.8. 경찰관은 '8촌 이내 친족이 관련된 사건'은 말지 못하게 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사건 담당 회피 대상자 범위를 넓힌 내부 훈령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였다.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이다.

써 향후 민원제기나 위헌소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외국의 사례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외중재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예외규정으로 보칙이나 부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¹¹⁾ 이제 중재법에서도 그 시행령을 정비하여 제도의 확산에 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¹²⁾ 이런 의미에서 보칙 규정에서 다루고 있는 제40조 규정은 삭제하여 부칙으로 다루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Ⅲ. 중재법시행령(안)의 체계

1. 일반적 시행령의 체계

보통 법률에는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놓고 있는데(3단의 체계) 내용을 분석하면 대체로 비슷한 부분이 많고 상위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이 3단 체계를 하나로 합쳐 운용하면 간편하고 다루기도 편리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는 법령의 체계 때문에 합칠 수 없는 부분이다. 시행령의 규정이 모범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해 대법원이 판시한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¹³⁾ 현행 실정법은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며 최고법인 헌법에서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행정규칙 등을 규정하여 현행 법령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⁴⁾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라 하여 법률 다음으로 효력이 있고 총리령과 부령은 시행규칙이라 하여 시행령의 다음으로 효력이 있다. 명령은 법률의 하위규범으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행령은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발하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서 그 업무소관은 행정작용 전반에 걸쳐 있다. 시행령

11) 중재법 제2조(적용범위)에서는 그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향후 중재지를 세분하여 시행령으로 그 유형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12) 2014.2.6. 한국은행, 국제수지 ‘서비스무역세분류통계(EBOPS: Extended Balance of Payments Services)’ 자료 참조, 법률서비스 적자규모는 2009년 4억7960만달러, 2010년 4억7340만달러, 2011년 5억210만달러, 2012년 6억5700만달러, 2013년에는 7억420만달러(7930억2000여만원)까지 늘어났다. 이는 3조원대로 추정되는 국내 법률시장 총 매출액의 26.4%에 해당한다.

13) 대법원 2001.8.24. 2000두 2716 판결,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범에 저촉되는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범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범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범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법리는,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상·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민주법치국가에서의 규범은 일반적으로 상위규범에 합치할 것이라는 추정원칙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선언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법적 혼란과 법적 불안정은 물론, 그에 대체되는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과 법적 방향은 상당히 심각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14) 헌법 제75조(大統領令) 참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委任받은 사항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大統領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근거가 되고 있다(정부의 행정입법권 형성).

의 입법절차는 그것이 행정입법으로서 국회의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과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중재절차의 명시

중재절차 참가와 관련하여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집행권원의 쟁점이 되는 부분으로서의 중재인에 대한 역할규정이 구체적으로 언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재의 목적과 관련해서도 시행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선택적 중재조항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중재에 의한 해결에 반대하는 경우, 중재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무효라는 판시¹⁵⁾에서도 중재법시행령의 제정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중재법 제4조와 관련하여서는 상사중재원이 당사자에 의한 중재인 직접선정약정과 달리 사무국에 의한 중재인 선정절차를 밟았으나 당사자가 중재심판절차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중재인 선정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없다.¹⁶⁾ 이런 경우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유나 형식을 명시하여 집행의 권원을 확보하여야 할 부분이다. 중재법 제6조와 관련하여 중재인이 중재절차 진행 중에 그 중재사건의 일방 당사자나 대리인의 의뢰로 당해 중재사건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을 같이 하는 동종사건의 중재대리인으로 활동한 행위가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중재판정취소사유에 해당한다.”라는 판시사항을 보면 변호사는 비록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지휘·감독에 복종하지 아니한 채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므로,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선정되어 중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도 변호사로서의 직무상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에게 상담을 하여 주고 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나, 중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그 중재사건의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과 중재절차 외에서 접촉하는 것은 가급적 제한되어야 하고, 나아가 당해 사건과 무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의뢰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으며, 더구나 그 수임사건이 당해 사건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을 같이 하는 동종의 사건인 경우에는 그 수임행위는 당해 중재인을 그 중재절차에서 배제시켜야 할 정도로 그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고, 만약 당해 중재인이 배제되지 아니한 채 중재판정이 내려졌다면 이는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이나 중재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때’에

15) 대법원 2003. 8.22. 선고 2003다 318 채무부존재확인

16)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0다 29264 중재판정취소

해당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¹⁷⁾ 이는 중재법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당해 중재사건의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과 중재절차 외에서 접촉하는 경우의 과태료 규정을 시행령으로 제정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사건진행 간 중대한 절차위반으로 당사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된다.

3. 중재인 자격의 명시

일반적으로 중재심리에는 중재인(arbitrator), 신청인(claimant), 피신청인(respond)이 참여하게 되며 단심으로 진행된다. 중재의 장점으로는 비밀 유지와 저렴한 비용 외 단심제에 따른 신속성 및 전문가의 참여 등이다. 그런데 현행 중재법에는 중재인의 자격에 관한 명시규정이 없다. 다만 구중재법 제5조에서는 중재인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규정한 바는 있다. 중재인에 대한 규정 명시에는 중재인의 자격 요건, 결격 사유 등을 명시하여 중재인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엔 중재인의 선정 절차를 비롯하여 권한과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중재법시행령 제정의 중요한 부분이다.¹⁸⁾ 중재인 위촉으로 이들이 중재에 참여하기 때문에 일부 사안에서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¹⁹⁾ 특히 중재인의 전문성을 두고 심리 중은 물론 심리결과에 대해서도 민원의 소지가 다분하며 심리결과에 대한 저항이나 헌법소원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다. 변호사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시비는 부재한 바 이를 유형화하여 그 자격의 기준을 시행령에서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나아가 중재판정과 관련하여 중재규칙 제8조에는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그 공표(公表)유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도입되어야 하고 부수적 효과로 중재판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구중재법 제11조 5항에서는 3개월 내로 규정하였지만 이 또한 훈시규정(訓示規定)으로 강행규정이 되지 못하였으며, 현행 중재법에는 명시규정이 불비하다. 중재법시행령을 제정하여 현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외에 다양한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7) 대법원 2004. 3.12. 선고 2003다 21995 중재판정취소

18)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명부규정(仲裁人名簿規程) 제3조에는 대외적 신망이 높고 중재능력이 있는 자를 위촉하고 있으며 법조계(10년 이상), 실업계(10년 이상), 학계(5년 이상) 공공단체 임원(5년 이상) 등 추상적이고 임의적인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19) 성문법주의하에서 법의 효력은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순으로, 하위법이 상위의 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법단계).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통과한 법을 말하며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한 법을 가리킨다. 시행규칙은 행정 각부의 장관이 결정한 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법 적용의 일반적인 사항을, 시행령은 구체적인 집행사항을, 시행규칙(세칙)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서식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체적 집행사항을 일일이 본법에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집행관련하여서는 그 절차 등 개정 또한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보칙 편에 소멸시효의 중단, 준용 규정,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벌칙 편에서는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증인·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V. 개별 조문의 검토

1. 총칙 편

제0조(목적) 이 영은 중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의 제1조는 동 법의 목적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중재법이 개정되면 사법상(私法上)의 분쟁뿐만 아니라 행정 영역인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쟁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등 과실범이나 재산범죄 중 2,000만원 이하의 피해액,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일정한 선별부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독점규제법상 독점규제법 위반여부를 청구원인으로 한다고 하는 청구에 관한 중재가 중재합의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²⁰⁾ 최근 직장 내 남녀 간의 갈등 문제와 관련하여 해결방안으로서 ADR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참조할 필요도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와 더불어 직장 여성의 의식과 언어의 일부분이 되고 있는 성희롱문제는 법을 뛰어 넘는 실질적인 성차별 고용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다.²¹⁾ 원칙적으로 성희롱 관련 분야는 형사법 영역에 속한다.

20) 강수미, “독점규제법 관련분쟁의 중재의 대상적격”, 『중재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0.3, p.60.

21) 신근제, “직장내 남녀 갈등의 해결방안으로서 ADR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3권 제4호, 2013.12, p.179.

제0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라 함은 중재절차에 의한 결과로 인해 중대하게 영향을 받을 자로서 중재의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으로 그 절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재”란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재합의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3.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4. “중재인”이란 중재에 있어 이 법에 따른 자격 교육을 이수하고 중재인 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법의 용어에 관한 정의는 이미 개별 입법되었거나 향후 입법될 분야별 ADR 등 다양하게 전개될 양상에 대비하여 선제적 효과가 있으며 중재적격의 확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재인과 관련하여 구체적 자격교육의 방법, 보수, 탈퇴 시의 중재인 위촉 등을 구체적·세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재합의와 관련하여 조정 또는 중재를 분쟁해결방법으로 정한 선택적 중재조항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조정이 아닌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으며 중재신청인의 선택적 중재조항에 기한 중재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중재법 제17조 제2항 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중재합의가 부존재한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중재절차의 나머지 단계에서는 그러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반면 위 선택적 중재조항은 중재합의로서의 확정적인 효력이 있게 된다.²²⁾

22) 대법원 2005.5.27. 선고 2005다 12452 중재판정취소.

2. 중재 편

(1) 중재절차의 참가자

1) 당사자 등

제0조(당사자의 의무)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중재절차의 결과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중재인의 절차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분쟁해결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중재절차 결과의 내용대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의 의무규정과 관련하여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분쟁해결’이 이루어지도록 비용규정을 현실에 맞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중재사건은 집중심리가 효율적이다.²³⁾ 현행법상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는 법률로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22조에서 찾아 볼 수 있다.²⁴⁾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할 것인가 ‘이행하여야 한다.’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비교해 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강제할 규정의 미비로 보고 향후 민법상 화해나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도록 별도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²⁵⁾

2) 중재인

제0조(중재인의 자격 등) ① 중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중재인협회에서 주관하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23)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13763756, 2014.2.21, 서울국제중재센터 초대 이사장(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국내에서 행하는 중재 사건에서도 집중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하는 외 “국제중재는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ADR)’가 발전할수록 각광받는 첨단 지식산업 분야로 다국적 기업 간 분쟁은 거의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 시장이 법률 시장 소송의 20% 정도에 미친다.”라고 한 바 있다.
24) 이는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의 활성화 규정으로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중재 등 재판 외의 간단하고 편리한 분쟁해결 절차를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24186호 일부개정 2012. 11. 20) 참조.

이 조문은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제3자인 중재인의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중재절차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자질로서는 전문성과 윤리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격 교육에는 중재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전문성과 윤리관을 정립할 수 있는 교과목의 교육 이수 시간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는 중재학회, 대한상사중재원,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 법인증센터 등 전문성과 윤리관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하며 중재제도의 보다 신속한 저변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우수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0조(중재인 명부) ① 중재인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인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재인 명부는 중재절차를 운영하는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중재인의 자격은 중재인협회에서 정하는 이수 과목이나 이수 시간을 충족시키는 중재인 자격 교육(신입, 보수)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중재절차를 운영하는 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정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를 위임받아 그 명부를 작성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게 함으로써 당사자가 중재인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인 명부를 중재인협회에 통보하고 중재인협회는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중재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0조(중재인의 면책) 중재인은 중재절차 및 결과와 관련하여 형사상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중재인이 분쟁해결 과정에서 본인의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그 절차나 결과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재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이러한 중재인의 면책조항은 미국의 개정 통일중재법(the Revised Uniform Arbitration Act Of 2000)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²⁶⁾

26) 미국의 경우 2,000년 전미통일주법위원회(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에서 통일중재법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였다. 중재인 면책조항과 전자적 정보의 활용 등을 추가하였다.

3. 중재판정부 편

제0조(중재인의 선정절차 등) ① 제0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인 명부에서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③ 제2항에 정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의 수는 3명으로 한다.

제0조 (중재신청의 취하)

① 중재신청인은 중재결정에 이르기까지 중재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취하할 수 있다.

② 중재신청인은 중재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사실이 적힌 서면을 중재판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인협회는 중재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중재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재인 명부에서 중재인을 자유스럽고 편리하게 선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중재인을 선정할 때는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면 1명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합의가 없으면 복수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중재절차를 주재하는 책임중재인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재법 제17조 제2항은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의 부재에 관한 이의제기 시기를 정하고 있는데,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은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관한 이의’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²⁷⁾

나아가 중재인에 대한 회피사유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기피(忌避)의 경우는 불공평한 결정을 할 염려가 있는 때로, 회피(回避)의 경우는 중재인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스스로 물러나는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중재인의 고지의무를 규정한 중재법 제13조 제1항의 법적 성격은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자 또는 선정된 중재인의 당사자들에 대한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 자체는 중재법 제5조 (이의신청권의 상실)에서의 ‘이 법의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으며 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를 어떤 경우로든 알게 되었음에도 중재법 제14조에 정한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뒤늦게 중재인에게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사유가 있었다거나 중재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중재인의 고지의무 절차위반이 있다는 사유나 중재규칙 제25조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중재법에서 정한 중

27) 대법원 2005.5.27. 선고 2005다 12452 중재판정취소

재판정 취소사유인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중재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 또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또한 중재판정의 일방 당사자의 소송대리인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선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1조 제4호의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와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중대한 사유로는 볼 수 없다.²⁸⁾

4. 중재절차 편

제0조(중재절차 개시 등)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절차는 피신청인이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진행되며 중재요청서에는 당사자, 분쟁의 대상 및 중재합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지체 없이 제0조에 따른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재인이 분쟁해결 절차의 개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 영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중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지체 없이 제0조에 따른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중재인이 분쟁해결 절차의 개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쟁해결 처리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거나 중재법시행규칙에 위임할 수 있을 것이다.

제0조(조사권 등) ① 중재인은 당사자 간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가 점유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중재인은 제0조제0항에 따른 중재인협회의 장이 발행하고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여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중재인이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중재의 자료로 사용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8) 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다 47901 중재판정취소.

중재인은 당사자 간의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가 점유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인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여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바, 중재인협회의 장이 발행하고 중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중재판정 편

제0조(화해) ①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화해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절차를 종료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을 때에는 제32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중재판정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화해 중재판정은 해당 사건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안은 중재제도의 활성화와 촉진을 위하여 조정, 중재 등의 일반적 방식 외에 비구속적 중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소액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용되는 절차로서 일정한 액수에 미달하는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선임한 중재인의 판정을 거치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분쟁해결 방식을 전술한 ‘정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처음부터 다양하게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법원에서만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구나 법 제정 심의단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6. 중재판정의 효력 및 불복 편

제0조(중재 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0조(중재 판정의 재심리) 중재판정이 중대한 법률위반,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의 경우 본안에 관하여 재심리할 수 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로 제기하는 경우는 당사자 간에 엄격하게 제한한다.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되는 ‘중재 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와 중재 판정에 붙여야 할 이유의 기재 정도 및 그 판단이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이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²⁹⁾ 중재인이 스스로 중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신청을 각하한 중재판정이 중재판정취소의 소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³⁰⁾ 당사 중재원이 당사자에 의한 중재인 직접선정약정과 달리 사무국에 의한 중재인 선정절차를 밟았으나 당사자가 중재심판절차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중재인 선정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없다.³¹⁾ 그리고 향후 법률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견해로 중재 판정의 재심리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중재 이용자들이 적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 사안들이 중재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부각될 수 있는 것이다.³²⁾ 특히 중재법 제15조(중재인의 직무 불이행으로 인한 권한종료)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재인은 법규의 신설취지와 전후 문맥으로 보아 사전에 중재합의 당시에 특정인으로 선정한 중재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와 제3자의 의사를 조정하여 선정된 중재인이라 할 수 있다.³³⁾

7.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편

제0조(국내 중재판정)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의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

제0조(외국 중재판정)

외국중재판정의 성립 후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행재판의 단계에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를 적용하여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당해 계약서 자체에 중재조항이 없더라도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일반거래약관 등 다른 문서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 중재계약이 성립하며 중재판정에서 지연손해배상금을 외화로 지급할 것을 명한 것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구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것만으로 집행판결을 구하

29) 대법원 2010. 6.24. 선고 2007다 73918 중재판정취소.

30) 대법원 2004.10.14. 선고 2003다 70249 중재절차위법확인·중재판정취소.

31)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0다29264 중재판정취소.

32) 홍석모, “중재상소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제20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0.3, p.17.

33) 신한동, “중재판정이 대법원에 의해 취소된 사례연구”, 『중재연구』제21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1.3. p.41.

는 소제기를 저지할 수 없다.³⁴⁾ 그리고 외국중재판정의 성립 후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행재판의 단계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를 적용하여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판례를 참조한 부분이다.³⁵⁾

8. 보칙 편

제0조(소멸시효의 중단) ① 이 영에 따른 중재절차 개시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중재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 중재절차 개시의 신청이 철회된 때
2. 중재절차 개시의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보는 때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재절차를 신청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중재사건에 관하여 중재절차 개시의 신청이 철회되거나 철회된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본 중재법시행령의 경우 국외중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9. 벌칙 편

제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0조제0항에 따른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2. 제0조제0항에 따른 증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서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한 자
3. 제0조제0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재인 자격을 취득한 자
4. 제0조제0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0조제0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기간이나 중재인 자격이 취소된 후 해당 중재업무를 수행한 자
6. 제0조제0항에 의한 중재인의 출입·조사·열람·복사 또는 참고인의 진술 청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② 중재인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4) 대법원 2001.10.12. 선고 99다 45543 중재판정취소·집행.

35) 대법원 2003. 4.11. 선고 2001다 20134 집행.

벌칙을 정할 때는 책임주의와 비례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벌칙에는 중재제도를 정립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에 대하여 이 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위반자에 대한 형량을 입법화함에 있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여 적정성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³⁶⁾ 이와 관련 현행 변호사법 제109조(벌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향후 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현행 벌칙규정을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併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⁷⁾

제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① 법 제00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00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년월일 대통령령 제0호]

- ① (시행일) 이 영은 년월일부터 시행한다.³⁸⁾
-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각종 소위원회는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년월일 제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6) 민사조정법 제41조(벌칙)제2항은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3년 징역형의 경우에는 1천 5백만원 정도의 징역형 대비 벌금형 액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37)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38)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등을 감안, 2년여의 기간을 정하고 중재법 제정일을 고려하여 201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V. 나오며

중재법시행령(안)의 제정을 추진함에 있어 전제되어야 할 부분은 관련법률의 검토 의 의원입법이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면밀히 다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중재법시행령(안)의 체계와 내용에 대해서 우선 검토해 보았다. 나아가 중재법시행령 제정(안)의 조문별 검토는 공청회나 심의 단계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재인의 자격은 중재인협회에서 정하는 이수 과목이나 이수 시간을 충족시키는 중재인 자격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구체적 자격교육의 방법, 보수, 탈퇴 시의 중재인 위촉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당사자는 중재인의 절차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분쟁해결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중재절차 결과의 내용대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중재인협회와 중재원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중재인이 분쟁해결 과정에서 본인의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그 절차나 결과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중재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명시하여 사건별로 전문화 유형으로 분류하여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이 보다 자율적이며 향후 위헌의 시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재절차에 따른 당사자 간의 합의의 효력에 대하여 ‘민법상 화해’의 효력만을 인정할 것인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도 함께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서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41조에 의해 중재규칙을 제정·관리하는 외 의무화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점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³⁹⁾ 특히 중재적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를 다룰 수 있도록 확대하는 외 성숙한 법률마인드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형사분야에서 중재역할을 맡고 있는 미국의 마을변호사(Village Attorney)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중재제도를 활성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이러한 관심과 노력으로 현실에 부합하는 실무적·입법적 방안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중재분야별 확산에 대한 최근 연구와 중재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입법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있다. 본 연구는 중재법시행령(안)의 제정이란 취지로 제시하는 것이며 다각도로 원용될 필요가 있다. 국외중재에서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칙이나 부칙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과정에서 제시된 조문별 내용은 시행령 심의과정에서 각 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다.

39) 제 41조(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제40조에 따라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이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참고문헌

- 강대성, 『민사집행법』, 삼영사, 2002.
- 강수미, “독점규제법 관련분쟁의 중재의 대상적격”, 『중재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0.
- 국회 법제실, 『법제실무』, 2011.
- 김상찬, “일본 ADR법상 인증제도의 현황과 과제”, 『중재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2.
- 김유환, “행정형 ADR 정비방안-모델절차법(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자료집,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7.
- 남선모, “한국중재의 분야별 확산에 관한 검토”, 『중재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12.
- 법무부, 형사관련 법령집, 2009.
- 신군제, “직장내 남녀 갈등의 해결방안으로서 ADR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3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3.
- 신한동, “중재판정이 대법원에 의해 취소된 사례연구”, 『중재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1.
- 이건목,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법제의 주요쟁점과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2.
- 정준영, “가칭 ADR기본법의 제정방향과 선결과제”, 『언론중재』 겨울호, 2010.
- 중재실무 세미나 자료, 한국중재학회, 2000.
- 최혁준, “중재판정부 구성에 관한 비교 연구”, 『중재연구』 제 16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6.
- 홍석모, “중재상소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0.
- 전원재판부 1997.5.29, 94헌바 22.
- 대법원 2001.10.12. 선고 99다 45543 중재판정취소·집행.
- 대법원 2001.8.24. 2000두 216 판결.
-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0다29264 중재판정취소.
-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0다 29264 중재판정취소.
- 대법원 2003.8.22. 선고 2003다 318 채무부존재확인
- 대법원 2003.4.11. 선고 2001다 20134 집행.
- 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다 21995 중재판정취소.

대법원 2004.10.14. 선고 2003다 70249 중재절차위법확인·중재판정취소.

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다 47901 중재판정취소.

대법원 2005.5.27. 선고 2005다 12452 중재판정취소.

대법원 2005.5.27. 선고 2005다 12452 중재판정취소.

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다 73918 중재판정취소.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13763756youngmca.tistory.com/klpa.org/bbs/board.php?bo_table=schedule&wr_id=1241.

Garner, Bryan A. (2005) Blacks Law Dictionary, Thomson/West.

Heather Strang,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in Australia*", Research School of Social Science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2001.

Stephen J. "*Principle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2nd ed., Thomson West, 2007.

The United Kingdom Arbitration Act.

The United States Arbitrations Act.

ABSTRACT

A Study on the System of the Arbitration Act Enforcement Ordinance

Seon-Mo Nam*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entered into force on December 31, 1999. It was modeled after the UNCITRAL Model Arbitration Law to meet the goal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arbitration system of South Korea mainly in terms of the Syste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In general, a hearing of arbitration is made up of an arbitrator, claimant, and respondent. This is accomplished in a single core. The advantages of arbitration are low cost and confidentiality. In addition, there is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and rapidity with a single core agent. However, under the current Arbitration Act, there is no provision expressly relating to the qualifications of arbitrators. This should be accomplished by the arbitration act enforcement ordinance.

Following specific details of the 'party' in conjunction with all the provisions of the Arbitration Act, Article 1 should be revised in a timely manner so that "conflict of private law" covers cases in which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is desirable. In addition, in Article 3 the phrasing of "also dispute 'judicial'" should be revised to cover disputes between parties.

Furthermore, the provisions of Article 40 are described in the Supplement and so it is preferable to address Supplementary Delete. In addition, this study will analyze ADR in Japan and present a plan to establish a law to resolve disputes outside of court in that country.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ssist in the study of legislating fundamental law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spite of this, there are many in business and academia who would like to modify the arbitration system in South Korea to improve its function. There is much interest in accomplishing this, so proposals for legislation should continue to be made. In order to accomplish this, the arbitration systems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an be used as a model. It can be seen that despite the idea that the parties involved engage in arbitration autonomously, many elements of the process from the selection of the arbitrator of the arbitral tribunal are specified in legislation and th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 Prof.Dr. Semyung Univ.

legislation that will allow arbitration to perform its intended function.

Any given arbitral tribunal can be specialized, typically in a case an arbitrator who is an expert in the field is selected. This helps to avoid complaints concerning the results of the arbitration.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however, this provision is often not employed and instead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chedule and Supplement concern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Finally, the promotion of the enactment of the Arbitration Law Enforcement Ordinance must be a top priority in order to ensure proper implementation of the arbitration law.

Key Words : Arbitration Act Enforcement Ordinance, Arbitral Tribunal, Arbitration Agreement, Arbitration Award, The Parties, Arbitration, Arbitrator